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and Fees)



## 이 간행물을 읽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간행물은 판매세 및 사용세 관련 이의제기 절차와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서 관리하는 기타 다양한 사업세 및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세 및 수수료(special taxes and fees)’라는 용어는 CDTFA에서 관리하는 판매세, 사용세 외의 사업세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CDTFA가 관리하는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목록은 2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개요 .....	2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
환급 청구 .....	10
법원에 소송 제기.....	13
승계인의 책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	14
기타 유형의 이의제기 .....	15
이의를 신청한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과 관련한 합의 제안 .....	17
세액조정 제안.....	20
파산 신청의 경우.....	21
추가 정보 .....	22

---

**참고:** 이 간행물은 발행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법률 및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의제기에 적용되는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간행물의 정보와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우선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세금 또는 수수료 계정을 담당하는 [CDTFA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개요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제기는 CDTFA의 사업세 및 수수료 부서 직원과 논의를 거쳐 해결됩니다. 논의를 거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한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CDTFA 이의 심사국(Appeals Bureau)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이의제기 쟁점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주정부 기관인 조세 심사청(Office of Tax Appeal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법에 명시된 기한 내의 이의제기를 통해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더라도,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이의제기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부과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함으로써 세금 또는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의제기 건이 이전 단계로 다시 회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 이의제기 절차의 일부 단계를 두 번 이상 거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류 중인 이의제기의 일정 체납액 및 청구액에 대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조: [17페이지](#)의 *이의를 신청한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과 관련한 합의 제안* 참조).
- 이의를 제기할 경우 CDTFA에서 발송한 모든 통지서 및 서신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에게 발송된 통지서 및 서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CDTFA에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 요구된 기한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인이 찍힌 날짜가 제출 날짜로 간주됩니다. 이 간행물에 명시된 모든 기한은 영업일이 아닌 *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과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의 미납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가 계류 중일 때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 페이지](#)의 *이자 관련 참고 사항* 참조). 귀하는 납부한 금액의 적용 방식과 관련한 의사를 명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이의제기 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세금 또는 수수료 부과액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납부한 금액의 체납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판매세 및 사용세 이의제기 절차와 특별세 및 수수료 이의제기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별세 및 수수료 관련 이의제기 절차에는 다른 주정부 기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본 간행물만 참조하지 마십시오. 해당 세금 또는 수수료를 관리하는 CDTFA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24~25 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세금 또는 수수료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규정 또는 CDTFA 간행물의 사본은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으로 확인하거나, 1-800-400-7115(CRS:711)번으로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자 관련 참고 사항

이의제기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귀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된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세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를 납부할지, 전액을 납부할지 결정할 때 CDTFA 환급액에 적용되는 이자율(흔히 ‘신용이자율’이라고 함)이 CDTFA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2012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체납된 세금 또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연 6%인 반면, 동일 기간의 환급액에 적용되는 신용이자율은 0%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연 7%인 반면 동일 기간 환급액에 적용되는 신용이자율은 연 1%입니다. 이자율은 6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CDTFA가 환급을 승인하고, 신용이자율이 0%를 초과하는 경우 CDTFA는 과다 납부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환급되는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신용이자를 지불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과 이자 계산 방법은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납세자의 선물 제공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CDTFA 직원이 알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CDTFA 직원은 해당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선물, 사례금, 경품, 향응, 대출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 CDTFA와 계약적 관계 또는 기타 사업 또는 금융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
- 직원의 공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혹은 직원이 수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이 제공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에서, CDTFA가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사업상 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수행한 경우.

#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감사 결과 귀하가 세금 또는 수수료를 과소 납부한 것이 확인되거나, CDTFA에서 귀하가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CDTFA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 또는 **납기 전 추심 결정 통지서(Notice of Jeopardy Determination)**의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과태료,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 발생한 이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결정 청원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다음 섹션 참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0페이지의 환급 청구** 참조).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간행물 76 Audits(감사)**에서 확인하거나 1-800-400-7115 (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재결정 청원

### 제출 기한

결정 통지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결정 청원(청원)이라고 합니다. 청원은 결정 통지서가 발부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가 발행되기 전 제출한 이의제기는 유효한 청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까지 청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된 체납액은 최종 금액이며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제출 마감일 이후 이의제기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 청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출 마감일을 놓친 경우, 체납한 것으로 결정된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적시에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체납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0페이지의 환급 청구** 참조).

납기 전 추심 결정 통지서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정보는 **16페이지의 납기 전 추심 결정 통지서에 이의제기**를 참조하십시오.

### 청원 내용

청원은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계정 번호가 포함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
- 이의 신청 금액 명시(알고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에서 부과된 금액 전액 또는 일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근거나 사유 작성.
- 본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청원에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CDTFA 이의 심사국에서 협의회를 주최합니다.

청원에는 CDTFA의 행정적 합의 프로그램에 따라 케이스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프로그램에 따른 검토는 기밀로 시행되며, 이의제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7페이지**에서 *이의*를 신청한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과 관련한 합의 제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청원 시 특정한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신으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CDTFA는 사용 가능한 양식인 **CDTFA-416, 재결정 청원서**를 제공합니다. 해당 양식의 사본은 이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으로도 제공됩니다.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성하여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제출한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청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원 제출

CDTFA 웹사이트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CDTFA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결정 통지서에 대한 이의제기 청원을 제출하려는 경우, [BTDFPetSection@cdtfa.ca.gov](mailto:BTDFPetSection@cdtfa.ca.gov)를 통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1-916-324-0678번을 통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다음 주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Petitions Section, MIC:38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특별세 및 수수료 결정 통지서에 대한 이의제기 청원을 제출하려는 경우, [adab@cdtfa.ca.gov](mailto:adab@cdtfa.ca.gov)를 통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1-916-323-9497번을 통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다음 주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 사업세 및 수수료 부서의 검토

사업세 및 수수료 부서(BTFD)에서 청원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BTFD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 이의제기가 계류 중인 경우, 청원을 수정하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추가 근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BTFD는 청원과 제공된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 내용을 서신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BTFD가 청원의 전체 또는 일부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귀하가 이전에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서신을 통해 이의제기 협의회에 대한 귀하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미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한 경우 서신을 통해 해당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FD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BTFD의 서신에 답변하여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하거나 이전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시에 이의제기 협의회

를 요청하지 않거나 BTFD의 요청에 따라 이전 협의회 요청 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BTFD의 결정을 기반으로 재결정 통지서가 발부되고 귀하의 이의제기 건은 종결됩니다.

### 이의제기 협의회

귀하가 BTFD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BTFD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을 확인)한 경우, 귀하의 케이스와 관련되지 않은 이의 심사국 변호사 또는 감사관이 이의제기 협의회를 주최하도록 이의 심사국으로 케이스가 회부됩니다.

BTFD가 귀하의 케이스를 이의 심사국으로 회부할 경우, 이의제기 협의회 확인(Verification of Appeals Conference) 양식을 동봉하여 서신을 통해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귀하는 해당 확인 양식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서 요청된 정보로는 현재 주소,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선호하는 이의제기 협의회 장소 등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준비한 CDTFA 사무소에서 주최됩니다.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 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42A Appeals Conferences\(이의제기 협의회\)](#)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간행물은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하거나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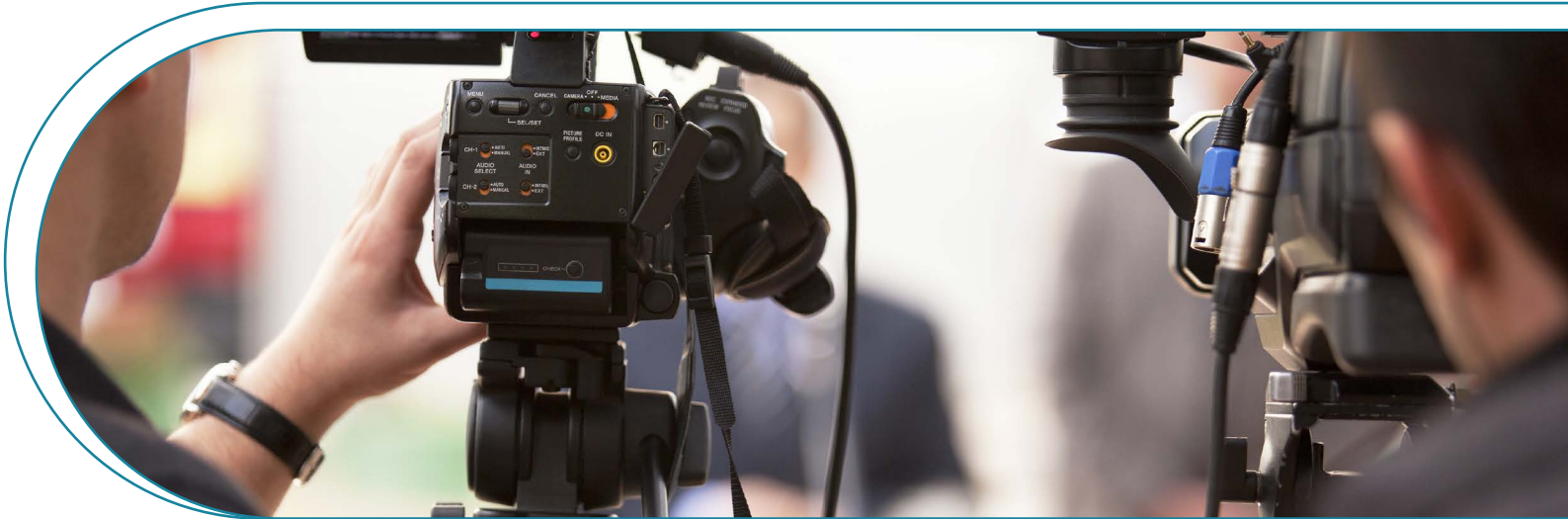
케이스가 접수되면 이의 심사국에서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을 정합니다. 이의 심사국에서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을 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이 정해지면 이의 심사국은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협의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는 이의제기 협의회 당일로부터 적어도 45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귀하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명시한 협의회 일정 신속 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새크라멘토에 있는 CDTFA 본부 사무소 또는 이의 심사국이 지정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이의제기 협의회에 참석.
- 화상 회의 시설을 갖춘 특정 CDTFA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화상 협의회에 참석.
- 전화를 통해 이의제기 협의회에 참여.

일정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세 가지 유형의 협의회 중 하나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면 이의 심사국은 이의제기 협의회 일정을 정하고,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는 이의제기 협의회 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발송될 수 있으나,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 협의회 당일로부터 21일 이내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의 심사국은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에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에 대한 응답 양식을 동봉하고, 귀하가 15일 이내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 협의회 참석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는 응답 양식에 이의제기 협의회 참석을 포기한다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즉, 체납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유지하되 협의회 참석은 원치 않음). 이의제기 협의회 참석을 포기하거나 이의제기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제기 협의회는 귀하 없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BTFD(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주 기관의 직원)가 이의제기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협의회 녹음/녹화

이의제기 협의회 내용을 녹음/녹화하려면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에 동봉된 응답 양식에서 해당되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이의 심사국과 BTFD(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주 기관)에 녹음/화본 또는 녹취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녹음/녹화 내용의 사본 제공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의 심사국은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협의회를 녹음/녹화하지 않으나, 그렇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협의회 시행 전 귀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녹음/녹화본 또는 녹취록 사본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이의제기 협의회 시행, 제출 서류

이의제기 협의회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실 및 관련법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에는 BTFD 직원이 참석하며 다른 주정부 기관이 이의제기 당사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법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목적은 귀하와 BTFD가 각자의 주장 및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이의 심사국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진행 중에도 서면 주장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면 주장과 증빙 서류는 이의제기 협의회 전에 미리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의제기 협의회 통지서에 대한 응답 양식을 작성하여 반송할 때 서면 주장 및 증빙 서류를 동봉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전에 이의 심사국에 서면 주장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심사국은 이의제기 협의회 진행 중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검토할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이후에는 이의 심사국에서 승인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만 서면 주장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려면 이의제기 협의회 중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FD가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심사국이 당사자의 추가 제출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청 당사자는 15~3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추가 제출 자료의 목적은 이의제기 협의회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회 후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15~3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BTFD 중 어느 측에서 주장 또는 증빙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지와 무관하게, 이의 심사국은 이의제기 협의회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귀하 또는 BTFD, 또는 두 당사자 모두가 주장 또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의제기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심사국의 결정

이의제기 협의회 후 이의 심사국은 케이스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한 분석 및 결정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결정의 4가지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제기가 전적으로 승인됨. (2) 이의제기가 전적으로 거부됨. (3) 이의제기의 일부는 승인되고 일부는 거부됨. (4) 결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BTFD가 '재감사'를 수행함. 결정에 따라 귀하의 이의제기가 승인, 거부 또는 일부 승인/일부 거부된 경우, 이의 심사국은 각 당사자의 추가 이의제기 옵션을 설명하는 서신이 동봉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결정에 따라 BTFD가 재감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 이의 심사국은 BTFD의 재감사 보고서를 수령한 후 이의 심사국이 다시 연락을 취할 것임을 통보하는 서신이 동봉된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BTFD가 재심사를 완료하면 BTFD는 재심사 보고서를 이의 심사국에 제출하고, 이의 심사국은 재심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각 당사자의 추가 이의제기 옵션을 설명하는 추가 서신을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가지 이의제기 옵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재검토 요청을 이의 심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는 특정 사안을 명시해야 하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BTFD는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주정부 기관이 이의제기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기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은 각 당사자의 이의제기 옵션을 설명하는 서신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심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심사국에 유효한 결정 재검토 요청이 제출되면, 이의 심사국은 결정을 다시 검토하여 추가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옵션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주정부 기관인 조세 심사청(OTA)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각 당사자의 이의제기 옵션을 설명하는 이의 심사국 서신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OTA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이의 심사국 서신에 신청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BTFD는 이의 심사국 결정에 대해 OT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른 주정부 기관이 이의제기의 당사자인 경우 OT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심사국이 추가 결정을 내리면 추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한 동일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의제기 옵션을 설명하는 이의 심사국 서신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추가 결정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OTA에 서면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의 심사국은 추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수락하고 다른 추가 결정을 내리거나 요청을 거부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적시에 제출했지만 요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 심사국은 해당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고 OTA에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의 심사국의 결정 또는 추가 결정에 대해 적시에 OTA에 재검토 또는 이의제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결정 또는 추가 결정에 따라 재결정 통지서가 발부되고 이의제기는 종결됩니다.

### OTA에 이의제기

OTA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제출 사항에 응답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릴 행정법 판사 3인에게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OTA 규정 및 OTA에 이의제기와 관련된 기타 정보는 OTA 웹사이트([www.ota.ca.gov](http://www.ot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A가 결정을 내린 후 OTA의 결정에 따라 재결정 통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CDTFA로 케이스를 돌려보냅니다.

### 재결정 통지서

이의 심사국(또는 해당되는 경우 OTA)에서 결정 통지서 또는 기타 부과액에 대한 귀하의 이의제기에 결정을 내린 후, CDTFA는 귀하에게 재결정 통지서 또는 기타 적절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미납 금액이 있는 것으로 통지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납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이의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환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통지서가 발부된 후 최종 30일까지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 환급 청구

귀하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CDTFA에 환급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11페이지의 신청 기간 제한참조). 해당 요건은 결정 통지서, 신고서 또는 기타 사유 등 귀하가 해당 금액을 납부한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적시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CDTFA는 귀하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 환급 청구 양식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디젤 연료세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특별 청구 양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단의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및 디젤 연료세 참조). 또는 환급을 요청하는 서신을 제출하거나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국(DMV)에 납부한 사용세 환급을 청구하려면 CDTFA-101-DMV Claim for Refund or Credit for Tax Paid to DMV(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의 사본은 모두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귀하 또는 귀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급을 요청하는 금액이 체납되지 않았다는 근거 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납부한 세금 신고 기간 및 청구하려는 환급액(알고 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귀하 또는 귀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급 청구 시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귀하는 이의제기 협의회에 대한 절대권 또는 환급 청구를 위한 이의제기를 OTA에 신청할 수 있는 절대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12페이지의 BTFD가 청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참조).

또한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귀하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성하여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제출한 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법(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Law)에 따라 담배 납세필 인지의 환급을 요청하는 유통업체는 환급 청구 시 CDTFA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의 이의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24페이지 참조).

## 디젤 연료세(Diesel Fuel Tax)

디젤 연료 사용자, 디젤 연료 수출업체, 디젤 연료 공급업체, 디젤 연료 최종 공급업체는 CDTFA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의 이의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24페이지 참조).

### 환급 청구 신청

CDTFA 웹사이트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환급 청구를 신청하지 않는 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CDTFA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환급 청구

판매세 및 사용세 환급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 청구서를 [BTFD-ADRS@cdtfa.ca.gov](mailto:BTFD-ADRS@cdtfa.ca.gov)를 통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1-916-445-2249번을 통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 DMV에 납부한 사용세 환급 청구

DMV에 납부한 사용세 환급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 청구서를 [BTFD-ADRS@cdtfa.ca.gov](mailto:BTFD-ADRS@cdtfa.ca.gov)를 통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1-916-324-2491번을 통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 특별세 및 수수료 환급 청구

특별세 및 수수료 환급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 청구서를 [adab@cdtfa.ca.gov](mailto:adab@cdtfa.ca.gov)를 통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1-916-323-9497번을 통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특별세 및 수수료 목록은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신청 기간 제한

판매세 및 사용세 환급 청구 및 대부분의 특별세 및 수수료 환급 청구 마감일은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 청구된 과다 납부가 발생한 기간의 환급 만기일로부터 3년 (DMV에 납부한 사용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DMV에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 환급을 원하는 금액의 납부일로부터 6개월.
- 결정에 따른 납부인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 유치권 또는 압류와 같은 집행 절차에 따라 CDTFA에서 징수한 납부액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3년.

주의 사항: 청구 신청 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CDTFA에서 관리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특정 청구건을 신청할 때 이 설명만 참조하지 마십시오. 청구를 신청하려는 특정 세금 또는 수수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해당 세금 또는 수수료 계정을 담당하는 CDTFA 부서에 문의하십시오([24페이지](#) 참조). 이 간행물의 정보와 청구 신청 기간 제한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우선합니다.

다른 고려 사항과 무관하게 CDTFA는 적시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CDTFA에 추가로 지불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간 제한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가 미납 상태인 경우 환급 청구

귀하가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결정에 적용된 납부액에 대해 적시에 환급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환급 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적용된 모든 후속 납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가 미납 상태인 결정에 적용된 납부 1건 이상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후 납부액에 별도의 환급 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CDTFA에서 환급 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CDTFA는 전체 신고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의 전액이 납부된 경우에 한해 환급 청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BTFD의 청구 검토

BTFD는 환급 청구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청구를 검토하는 동안 BTFD가 귀하에게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FD는 청구 및 귀하가 제출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청구의 전체가 승인되어야 할지, 일부가 승인되고 일부는 거부되어야 할지 또는 전체가 거부되어야 할지 결정합니다.

### BTFD가 청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승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BTFD가 환급 청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 환급 통지서가 귀하에게 발부됩니다(BTFD가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BTFD는 해당 결정은 발효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공개 기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CDTFA 또는 기타 주정부 기관에 체납한 다른 금액에 해당 환급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환급 통지서에 과다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금액은 귀하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직접 지불되는 환급액은 귀하가 과다 납부한 금액에서 체납된 다른 금액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BTFD가 청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BTFD가 청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BTFD는 해당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귀하에게 발송합니다. BTFD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심사국에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이의 심사국의 재량입니다. 가령, 이의 심사국에서 주최한 이의제기 협의회 후 재결정 청원이 거부된 결정 통지서에 따라 납부한 금액에 환급 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환급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하고 해당 요청이 승인될 경우, 위에서 언급된 재결정 청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 이의 심사국의 불리한 결정과 관련하여 OTA에 이의제기 가능). 절차가 종결되면 CDTFA에서 해당하는 경우 환급 통지서 또는 환급 청구 거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이 거부된 경우 BTFD의 결정에 따라 환급 요청 거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환급 요청이 거부되었으나 이의제기를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는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CDTFA의 Notice of Denial of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거부 통지서)가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원은 관련 세금 또는 수수료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CDTFA가 환급 청구 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귀하는 더 이상 상환청구권을 갖지 않으며 이의제기는 종결됩니다.

환급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DTFA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CDTFA가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CDTFA의 행정적 검토는 중단되며 이의 제기 케이스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참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DTFA에 환급을 위한 행정적 청구를 먼저 신청하지 않는 한 세금 또는 수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 청구 소송은 CDTFA에 제출된 환급 청구에 확인된 근거로 제한됩니다. 환급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승계인의 책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판매세 및 사용세, 디젤 연료세, 자동차 연료세, 유류 사용세 또는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에 대해 사업체 또는 재화 재고와 관련한 체납액을 보유한 자로부터 사업체 또는 재화 재고를 매수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세금 또는 수수료와 그에 대한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해 매수 가격까지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승계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BTFD에서 귀하가 승계인의 책임을 진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BTFD는 승계인의 책임 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귀하는 책임의 검토 청원을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의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섹션에 설명된 재결정 청원 제출 시 적용되는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기한 제한에 따라 검토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협의회 및 OTA 이의제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검토 통지서

이의제기 결과로 승계인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액이 명시된 검토 통지서가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 발송 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확정됩니다. 귀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10페이지](#)의 **환급** 청구의 설명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환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형의 이의제기

## 행정적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재결정 청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서에 부과된 체납액이 확정됩니다. 체납액이 확정된 후에는 귀하가 법적으로 해당 체납액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DTFA는 발부된 결정 통지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할 경우, CDTFA의 재량에 따라 기한을 초과한 이의제기를 ‘행정적 이의 신청’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 재결정 청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재결정 청원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행정적 이의제기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BTFD가 접수 확인 서신을 발송하여 해당 이의제기가 기한 경과로 거부되거나 행정적 이의 신청으로 허용된 경우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다. 행정적 이의 신청으로 허용되면, 해당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재결정을 위해 적시에 접수된 청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단, 남은 세금이나 수수료, 이자, 과태료 추심 활동이 일반적으로 유예되지 않으며 귀하는 이의제기 협의회나 OTA 이의제기에 대한 절대권이 없다는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행정적 이의 신청은 이의제기가 행정적 이의 신청으로 허용되기 전후에 납부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가 행정적 이의 신청으로 허용되고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액이라 생각되는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납기 전 추심 결정 통지서에 이의제기

특정 상황에서 CDTFA는 미납 세금 및 해당되는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한 ‘Notice of Jeopardy Determination(납기 전 추심 결정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납기 전 추심 결정은 납세자가 통보받은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CDTFA는 결정된 체납액 추심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짜(예: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함께 재결정 청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구된 보증금과 함께 재결정 청원을 적시에 신청하면, 적시에 신청한 다른 재결정 청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원이 검토됩니다. 또한 해당 청원에 대한 CDTFA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심 조치는 보류(유예)됩니다.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결정 청원을 신청하거나 납기 전 추심 결정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과태료가 부과되며, CDTFA의 추심 활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단, 추가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귀하는 납기 전 추심 결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에 따라 행정 심의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정이 과도함을 입증.
- 압류 대상인 자산 매각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행정 심의회까지 매각을 유예해야 함을 입증.
- 자산에 대한 조치 해제 요청.
- 추심 유예 요청.
- 납기 전 추심 결정에 따라 제기된 기타 문제 검토 요청.

행정 심의회를 적시에 신청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재결정을 위해 적시에 접수된 청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단, 행정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CDTFA의 추심 조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 심의회 신청 시 납부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 심의회를 적시에 신청하더라도, 귀하가 납기 전 추심 결정의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했으며 해당 금액의 납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과다 납부액이라 생각되는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의를 신청한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과 관련한 합의 제안

CDTFA에 대한 이의제기(예: 재결정 청원, 행정적 이의 신청 또는 환급 청구)를 진행 중이거나 OTA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CDTFA의 합의 및 납세자 서비스국(Settlement and Taxpayer Services Bureau, 합의 심사국)에 합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TA가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문제는 합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케이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합의 심사국과 정식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CDTFA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요청 계류 중에는, CDTFA 또는 OTA에서 계류 중인 이의제기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CDTFA의 합의 프로그램은 현재 제트 연료세, 자동차 연료세 또는 화재 예방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은 유해 물질 세법(Hazardous Substances Tax Law)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아동 납중독 예방세 및 직업상 납중독 예방세 제외)에 대한 합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합의 검토 요청

귀하는 [CDTFA-393 Settlement Review Request for Sales and Use Tax and Special Taxes and Fee Cases](#)(판매세, 사용세 및 특별세 및 수수료 케이스에 대한 합의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CDTFA-416 Petition for Redetermination](#)(재결정 청원서) 제출 시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케이스에 대한 합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양식의 사본은 이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합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적절히 승인 및 처리되도록 하려면 귀하의 모든 요청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현재 주소.
-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대리인의 위임장 사본 [CDTFA-392 Power of Attorney\(위임장\)](#)(이 양식의 사본은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납세자 계정 번호(예: 판매자 허가증 번호).
- 세금 또는 수수료 유형(예: 판매세 및 사용세) 및 관련 기간.

합의 요청은 [settlement@cdtfa.ca.gov](mailto:settlement@cdtfa.ca.gov)을 통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1-916-323-3387번을 통해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Settlement and Taxpayer Services Bureau, MIC:8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7

### 합의 요청 검토

합의 심사국은 요청을 검토하여 귀하의 케이스가 검토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귀하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합니다. 합의 심사국이 실제적 또는 법적인 쟁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합의 검토 대상으로 수락됩니다. 다만, 합의 요청은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심사국에서 CDTFA의 입장에 대한 소송 위험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거나 적절한 합의 평가를 위한 사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는 합의 검토 대상으로 수락되지 않습니다.

합의 심사국은 케이스를 검토한 후 제안된 합의 금액을 안내합니다. 합의 검토 요청 시 제안된 금액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와 합의 심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 절차가 종결되고 이의제기는 일반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됩니다.

### 제안된 합의 승인

귀하와 합의 심사국이 합의 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확인서 및 합의서(합의 조건이 포함된 법적 문서)가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귀하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제출한 후, 합의 심사국은 CDTFA의 수석 법률고문의 승인을 받기 위해 송부할 합의 권고안을 준비합니다. 이후 더 중대한 케이스는 법무장관에게 송부되며, 법무장관은 30일 이내에 제안된 합의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안된 합의서와 법무장관의 의견은 CDTFA 국장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국장이 제안된 합의서가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합의 권고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합의서가 승인되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요구된 합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개 기록

CDTFA 국장이 제안된 합의를 승인하고 합의된 세금 감면액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합의와 관련한 일부 정보는 공개 기록으로 분류되어 CDTFA 국장 사무실에서 1년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이름.
- 이의제기 대상인 총 금액.
- 합의를 통해 합의된 금액.
- 합의가 주에 최선의 이익인 사유의 요약 정리.
- 해당되는 경우 합의의 합리성에 관한 법무장관의 결론.

참고: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업무 스타일, 장치, 사업상 기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때 귀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공개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수 공개 기록을 제외하고 합의서는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최종 판결이며 당사자 중 한쪽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 심사국에 문의하십시오(24페이지 참조).



# 세액조정 제안

세액조정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은 CDTFA에 체납된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는 제안입니다. OIC 프로그램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또는 자산이 없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수단이 없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쇄된 계정에 확정된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또는 미납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받지 않았으며 전에 세액조정 제안을 받지 않은 활성 계정에서 CDTFA가 부과한 세금이나 수수료 체납액의 '기준을 충족한' 확정액이 있는 경우.
- 현재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5년~7년 사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납 금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

온라인에서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를 참조하여 귀하에게 OIC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는 폐업한 사업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가 있으나 OIC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OIC 부서(916-322-7931)로 문의해 주십시오.

OIC를 제안하려면 OIC 신청서([CDTFA-490](#)(개인) 또는 [CDTFA-490-C](#)(모든 기타 대상))를 작성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의 경우

작성된 신청서 및 신청서에 설명된 필수 증빙 서류를 귀하의 계정에 배정된 추심원에게 제출하거나 OIC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OIC 신청서는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의 *간행물 56 Offer in Compromise(세액조정 제안)*에서 확인하거나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OIC 절차에 대한 질문은 OIC 담당 부서(1-916-322-7931)로 문의하십시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CDTFA가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자동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자동 정지 효력 발생 시에도 CDTFA는 다음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또는 재감사 수행.
- 평가액 산정.
- 결정 통지서 발부.
- 체납 세금 조사.
- 체납 세금 조정.
- 재결정 또는 환급 요청 허용.
- 이익제기 협의회 개최.
-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반으로 파산 케이스의 청구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추가 정보

### 이의제기 규정

규정 35001~35067절(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8조 35001~35067절)로 구성된 CDTFA 이의제기 규정의 사본은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하거나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OTA의 조세 심사 규정은 온라인([www.ota.ca.gov](http://www.ot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납세자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DTFA는 다양한 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행물 중 일부는 특정 유형의 사업체에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DTFA는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법률 및 규정집의 사본을 각각 발행합니다.

CDTFA 간행물 목록은 [간행물 5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Resource Guide to Free Tax Products and Services*(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무료 세금 제품 및 서비스 자료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양식 및 간행물 및 일반적인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온라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제공되며,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자동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 세금 자문

세금 또는 수수료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CDTFA 담당 부서 또는 담당국에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CDTFA의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가 거래 또는 활동과 관련한 CDTFA의 서면 자문을 합리적으로 따른 결과 CDTFA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CDTFA에서 결론을 내리면, 해당 거래 또는 활동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이자,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면제 조건이 적용되려면 CDTFA의 자문은 귀하를 납세자로 확인했으며, 거래 또는 활동의 사실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귀하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거래 정보가 유사하더라도 CDTFA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서면 의견을 활용한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CDTFA는 전화 또는 대면으로 구두 자문도 제공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두 자문을 활용한 경우 CDTFA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관련 이자 및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 귀하가 정확히 무엇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CDTFA가 어떻게 응답했는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하가 적합한 서면 자문을 합리적으로 따랐기에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여 해당 세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관련 서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시시오.

Tax Policy Bureau, MIC:92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92

###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시시오.

Program and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특별세 및 수수료 목록**

- 항공기 제트 연료세(Aircraft Jet Fuel)
  -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California Tire Fee)
  - 대마초세(Cannabis Taxes)
    - 대마초 소비세, 재배세(Cannabis excise tax, cultivation tax)
  - 아동납중독 예방세(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발급(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es)
  - Diesel Fuel Tax(디젤 연료세)\*
  - 전자폐기물 재활용세
  - 긴급전화 사용자 추가세(Emergency Telephone Users Surcharge)
  - 에너지 자원 추가세(Energy Resources Surcharge)
  - 유해물질세(Hazardous Substances Tax)
    - 처분료, 환경부담금, 시설료, 발생료(Disposal fees, environmental fees, facility fees, generator fees)
  - 종합 폐기물 관리료(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 납산 배터리세(Lead-Acid Battery Fees)
    - 캘리포니아주 배터리세, 제조사 배터리세(California battery fee, manufacturer battery fee)
  - Marine Invasive Species Fee(해양 침입종세)
  - 자동차 연료세(Motor Vehicle Fuel Tax)
  - 천연가스 추가세(Natural Gas Surcharge)
  - 직업상 납중독 예방세(Occupational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기름 유출 예방 및 관리세(Oil Spill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
  - 기름 유출 대응세(Oil Spill Response Fee)
  - 지역 철도 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세(Regional Railroad Accident Preparedness and Immediate Response Fee)
  - 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
  - Use Fuel Tax(유류 사용세)\*
  - 수자원 이용세(Water Rights Fee)
- \* 국제연료세 협정(IFTA)에 따라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와 관련될 수 있는 본사 사무소

Appeals Bureau, MIC: 85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5  
1-916-323-3166 전화  
1-916-324-2618 팩스

Petitions Section, MIC:38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1-916-445-2259 전화  
1-916-324-0678 팩스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1-916-445-1315 전화  
1-916-445-2249 팩스

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1-916-445-9524 전화  
1-916-324-2491 팩스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1-916-445-2988 전화  
1-916-323-9497 팩스

Settlement and Taxpayer Services Bureau,  
MIC:8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7  
1-916-324-2836 전화  
1-916-323-3387 팩스



## 판매세 및 사용세 계정용 CDTFA 현장 사무소

Bakersfield: 1-661-395-2880

Cerritos: 1-562-356-1102

Culver City: 1-310-342-1000

El Centro: 1-760-352-3431

Fairfield: 1-707-427-4800

Fresno: 1-559-440-5330

Glendale: 1-818-543-4900

Irvine: 1-949-440-3473

Norwalk: 1-562-466-1694

Oakland: 1-510-622-4100

Rancho Cucamonga: 1-909-257-2900

Rancho Mirage: 1-760-770-4828

Redding: 1-530-224-4729

Riverside: 1-951-680-6400

Sacramento: 1-916-227-6700

Salinas: 1-831-754-4500

San Diego: 1-858-385-4700

San Francisco: 1-415-356-6600

San Jose: 1-408-277-1231

Santa Clarita: 1-661-222-6000

Santa Rosa: 1-707-576-2100

Ventura: 1-805-677-2700

West Covina: 1-626-480-7200

## 타주 계정

Chicago, IL: 1-312-201-5300

Houston, TX: 1-713-739-3900

New York, NY: 1-212-697-4680

Sacramento, CA: 1-916-227-6600

## 특별세 및 수수료 계정

Sacramento, CA: 1-800-400-7115(CRS:711)



##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

CDTFA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간편한 업무 절차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를 지정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로 문의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1-916-324-2798(전화) • 1-888-324-2798(수신자 부담 전화) • 1-916-323-3319(팩스)

**참고:** 이 간행물의 진술은 일반적이며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상태입니다. 법률은 복잡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합니다.

CDTFA-416 REV. 10 (1-18)  
**재결정 청원**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사업체 상호	계정 번호
납세자 이름	세금 또는 수수료 유형

**재결정 청원**  
 행정적 이의제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서 발송한 미납 금액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 재결정 청원서를 사용하여 해당 통지에 대한 행정적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중요 기한이 있습니다.

1. 결정 통지서, 결손금 평가 통지서 또는 승계인의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추심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CDTF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청원서 제출인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은 의 날짜를 \_\_\_\_\_ 기준으로 기한) \_\_\_\_\_

(의 \$ 금액에 대한 통지서 관련 청원을 제출합니다 \_\_\_\_\_.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근거를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필수):



또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제출할 준비가 된 새로운 증빙 서류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서 검토 과정에서 CDTFA 직원은 귀하의 이의제기 협의회 요청에 대해 묻고, 해당 협의회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적시에 CDTFA 직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의제기가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로 승인되면 CDTFA의 행정적 합의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프로그램의 검토는 기밀로 시행되며, 이의제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 귀하의 요청 사항을 표시해 주십시오.

- 본인은 이의 심사국(Appeals Bureau) 변호사 또는 가장 가까운 사무소 또는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CDTFA 본부의 CDTFA 감사관이 참여하는 이의제기 협의회를 요청합니다.
- 합의 프로그램에 따라 이의제기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	서명 날짜	운영 시간 중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이름(정자로 작성)	직위/법적 자격	이메일 주소

본 양식 또는 수령하신 통지서의 내용과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합니다. 재결정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수수료, 이자 또는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수수료, 이자 또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 납부했다고 생각될 경우 적시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도 미납 세금/수수료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CDTFA-101 (앞면) REV. 18 (9-19)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뒷면 설명 참조)

납세자 또는 수수료 납부자 이름	CDTFA 계정 번호(청구 1건당 계정 번호 1개만 작성)
사회보장번호 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무한책임사원(GP, 해당되는 경우)
사업체 상호(해당되는 경우)	사업체 주소(해당되는 경우)
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에 적용되는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
- 목재 평가세(Lumber Assessment)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 (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 Surcharge)

차량 또는 차량관리국(DMV) 미등록 선박의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세 과다 청구 관련한 청구는 DTFA-101-DMV, *Claim for Refund or Credit for Tax Paid to DMV(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를 작성하십시오.

위의 세금/수수료 프로그램의 경우 작성한 양식을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BTFD-ADRS@cdtfa.ca.gov

- 주류세(Alcoholic Beverage Tax)
-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California Tire Fee)
- 대마초세(Cannabis Taxes)
- 아동납중독 예방세(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 규제 전자폐기물 재활용세(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 디젤 연료세(Diesel Fuel Tax)
- 긴급전화 사용자 추가세(Emergency Telephone Users Surcharge)
- 에너지 자원(전기) 추가세(Energy Resources (Electrical) Surcharge)

위의 세금/수수료 프로그램의 경우 작성한 양식을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adab@cdtfa.ca.gov

- 화재 예방세(Fire Prevention Fee)
- 유해물질세 (Hazardous Substances Tax)
- 종합 폐기물 관리료(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 Lead-Acid Battery Fee(납산 배터리세)
- Marine Invasive Species Fee(해양 침입종세)
- 자동차 및 제트 연료세(Motor Vehicle & Jet Fuel Tax)
- 천연가스 추가세(Natural Gas Surcharge)
- 직업상 납중독 예방세(Occupational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
- 지역 철도 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세(Regional Railroad Accident Preparedness and Immediate Response Fee)
- 보험사에 대한 세금(Tax on Insurers)
- 산림 벌채세(Timber Yield Tax)
- 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
- 유류 사용세(Use Fuel Tax)
- 수자원 이용세(Water Rights Fee)

아래 서명자는 \$의 금액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세금, 이자 및 과태료로 구성된 기타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크레딧을 청구합니다.

- 세금 신고서 접수 기간: \_\_\_\_\_ 및 수단: \_\_\_\_\_
- 결정서/청구서 날짜: \_\_\_\_\_ 및 금액: \_\_\_\_\_
- 기타(완전히 작성): \_\_\_\_\_

환급 근거(필수 작성): \_\_\_\_\_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  첨부됨  요청 시 제공 가능

서명	서명 날짜
이름(정자로 작성)	담당자(서명자가 아닌 경우)
직위/직책	담당자의 직위 또는 직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메일

\*해당되는 사회보장번호 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CDTFA-324-GEN, 개인정보 관련 고지(Privacy Notice)를 참조하십시오.

CDTFA-101 (뒷면) REV. 18 (9-19)

### 환급 청구서 작성 지침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를 제출할 때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유,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고, 세부 정보 및 과다 납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양이 많은 경우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숙지해야 할 사항

- 청구는 세금/수수료 프로그램\*의 소멸시효 만기 전 접수되어야 합니다.
- 시효 준수 판단은 귀하의 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접수일은 우편 발송(소인) 날짜, 전자적 전송일(해당되는 경우) 또는 가장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는 서명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서 한 건당 하나의 계정 번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여러 건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정별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가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와 관련된 경우 귀하의 청구에는 결정서 1개에 적용되는 미래의 모든 납부가 포함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시 별도의 청구가 필요했음.) 결정 통지서(결정서)가 2개 이상 발부된 경우, 해당 결정서와 관련된 미래의 모든 납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결정서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접수 방법

- CDTFA 웹사이트 [cdtfa.ca.gov](http://cdtfa.ca.gov)에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환급을 요청할 계정을 클릭하고 I Want To(원하는 옵션) 섹션에서 More(더 보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Submit a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접수) 링크를 선택하고 표시된 메시지를 따릅니다.
- 첫 페이지에 열거된 적절한 위치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CDTFA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CDTFA 사무소 목록은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웹사이트 참조).
- 추가 정보
-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CRS:711)번)에 전화하면 세금 또는 수수료 계정을 담당하는 사무소로 연결됩니다.
- 간행물 117, Filing a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참조.
- 간행물 17, Appeals Procedures(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참조.

#### 전자 양식 작성 방법

- **납세자 또는 수수료 납부자 이름 및 계정 번호:** CDTFA에 등록된 이름과 계정 번호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CDTFA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환급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에 표시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CDTFA에 등록된 이름이 아니면 사업체 상호(dba)를 기재합니다 마십시오.
- **사회보장번호/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환급 또는 그 일부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공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CDTFA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CDTFA-324-GEN, 개인정보 관련 고지(Privacy Notice) 참조). 청구인이 결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사회보장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동업 관계를 보유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동업자의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체의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기재합니다.
- **환급 금액:** 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과다 납부 유형:** 세금 신고서 금액, 결정/청구 금액 또는 기타 유형의 과다 납부 중 청구하는 환급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타' 옵션을 선택한 경우 청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환급 사유:** 환급 청구의 사유를 명시하거나 과다 납부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섹션을 작성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 상호:** 사업체 상호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이름이 John Doe이고 상호(dba)가 XYZ Auto Repair인 경우 XYZ Auto Repair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 및 직위/직책:** 청구서 양식 작성자는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직위 또는 직책(예: 경리, 변호사, 회계사, 납세자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명 날짜:** 청구서 양식에 서명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담당자(서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이 기재란은 CDTFA에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서명자 제외)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납세자 또는 수수료 납부자가 지정한 직위,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일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전화번호(및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이메일:** 이메일 주소(및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환급 청구 접수 기간은 다양한 요인(특히 과다 납부 유형 및 환급 청구 대상인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대상인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상기 언급된 간행물 117 또는 간행물 17도 참조하십시오.

CDTFA-101-DMV(앞면) REV.2 (1-18)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  
**(DMV에 납부한 세금용)**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뒷면 설명 참조)

소유자 이름	소유자 사회보장번호* 또는 연방 고용주 번호
주소(스트리트, 시, 주, 우편번호)	

본인은 \$의 금액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세금 과태료로 구성된 기타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크레딧을 청구합니다.

자산 유형: 차량 미등록 선박

VIN/HIN		
제조사 및 연식		
구매일	세금 납부일	구매 가격

상기 기재된 차량관리국(DMV) 과다납부 사유:

---



---



---



---



---



---



---

증빙 서류:

- 첨부됨
- 요청 시 제공 가능

일반적으로 DMV에 초과 납부한 사용세에 대한 환급 청구는 DMV 등록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초과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두 기간 중 더 늦은 만료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상기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서명		서명 날짜	
이름(정자로 작성)		담당자(서명자가 아닌 경우)	
직위/직책	전화번호 ( )	담당자의 직위 또는 직책	전화번호 ( )

\* 해당되는 사회보장번호 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CDTFA-324-GEN, 개인정보 관련 고지(Privacy Notice)를 참조하십시오.



CDTFA-101-DMV (뒷면) REV. 2 (1-18)

### 환급 청구서 작성 지침

환급 청구 제출 시 세금의 과다 납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예: 잘못된 세율 사용, 잘못된 구매 가격 사용, 적법한 가족 간 양도 등). 또한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는 세부 정보 및 과다 납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영수증, 구매 계약서 또는 구매 가격과 구매 날짜 확인을 위한 기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양이 많은 경우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소로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서를 보내 주십시오.

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소유자 이름:** DMV에 등록된 소유자로 간주되는 이름.

**소유자의 사회보장번호/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환급 또는 그 일부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공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CDTFA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CDTFA-324-GEN, 개인정보 관련 고지(Privacy Notice) 참조). 청구인이 결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사회보장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동업 관계를 보유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동업자의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법인(법인으로 구성된 동업 포함)인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 등록 시 등록된 소유자가 제공한 주소입니다.

**환급 금액:** 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산 정보:** 환급 청구 대상이 DMV에 등록된 차량 또는 미등록 선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차량 식별 번호(VIN)/선체 식별 번호(HIN)를 제조사 및 연식과 함께 기재합니다.

**구매일:** 차량/미등록 선박 구매 날짜.

**\*\*세금 납부일:** 차량/미등록 선박이 DMV에 등록된 날짜.

**구매 가격:** 차량/미등록 선박의 구매 가격.

**서명 및 직위/직책:** 등록된 소유자 또는 청구서 작성자는 이 공간에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자는 경리, 회계사, 변호사 등일 수 있습니다.

**서명 날짜:** 청구서 양식에 서명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담당자(서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이 기재란은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에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서명자 제외)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등록된 소유자가 지정한 직원,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DMV에 과다 납부한 사용세에 대한 환급 청구는 DMV 등록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초과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두 기간 중 더 늦은 만료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간행물 117 환급 청구서 제출(Filing a Claim for Refund)을 참조하십시오.**

CDTFA-393 REV. 7 (8-19)  
**판매세,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  
**케이스 합의 검토 요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합의 검토 요청**

사업체 상호	계정 번호
납세자/수수료	케이스 번호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합의 프로그램에 따른 케이스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예시로는 재결정 청원, 행정적 이의 신청 또는 환급 청구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이의제기 과정에 있는 한 합의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심의회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합의 요청 및 후속 커뮤니케이션은 기밀로 간주되며 이 정보는 다른 CDTFA 부서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 계정의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을 요청합니다(날짜: \_\_\_\_\_ ) \_\_\_\_\_  
(통지 날짜, 청구 또는 환급 청구 날짜)

(기간: \_\_\_\_\_ ) \_\_\_\_\_  
(월/일/연도) (월/일/연도)

- 앞서 이의제기에 명시된 사유에 대한 합의 검토를 받음
- 맞/또는 아래에 명시된 사유(선택 사항):



본인은 합의가 재량에 따르며, 제안은 검토 대상이고, CDTFA 합의 부서 직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제안만 CDTFA 경영진에게 승인을 위해 전달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서명	날짜	전화번호
이름(정자로 작성)	직위/법적 자격	이메일 주소

**참고 사항:**

합의 프로그램은 현재 제트 연료세, 자동차 연료세, 화재 예방세와 관련된 이의제기 또는 보험세 이의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납중독 예방세 및 직업상 납중독 예방세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제외하고, 유해 물질 세법과 관련된 이의제기는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서 관리합니다.

합의 요청은 [settlement@cdtfa.ca.gov](mailto:settlement@cdtfa.ca.gov)(이메일) 또는 1-916-323-3387번(팩스)로 보내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Assistant Chief Counsel, Settlement & Taxpayer Services Division MIC:8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7.











